

- ③ 선행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법한 선행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.
- ⑤ 광업권 취소처분 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적법하다.

10 정답 ⑤

- ① 과세관청은 부과 취소로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(대판 1995.3.10, 94누7027).
-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
- ③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,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때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(대판 1987.2.10, 86누91).
- ④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,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된다(대판 1997.1.21, 96누3401).
- ⑤ 선출원을 적법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생긴이 사건에 있어서, 피고가 1966. 8. 24.자로 1965. 12. 30.자의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원고의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, 원판결은 정당하고, 논지 이유없다(대판 1967.10.23, 67누126).

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,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「행정절차법」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이므로 역시 법률우위의 원칙하에 놓인다.
-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.
-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「행정소송법」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.
- ⑤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,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 여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.

12 정답 ①

- ①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도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,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판 2002.11.26, 2002두5948).
- ②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.
- ③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(대판 1996.5.31, 95누10617).
- ④ 공법상 계약은 대등하고 비권력적이어서 이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.

- ⑤ 수도나 전기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.

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인다면 이는 무효이다.
- ②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·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.
- ③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 중 고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·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「공유수면매립법」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.
- 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.

14 정답 ④

- ① 기속행위, 기속재량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하였다(대판 1975.8.29, 75누23). 즉 재량행위에는 붙일 수 있다.
- ② 확실하면 이를 기한이라 하고 불확실한 경우 이를 조건이라 한다.
- ③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 중 사용·수익허가의 기간 그 자체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(대판 2001.6.15, 99두509).
- 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(대판 1991.12.13, 90누8503).
- ⑤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(대판 1997.3.11, 96다49650).

15 행정계획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적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,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.
- ③ 형량 시에 여러 이익 간의 형량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것이 객관성·비례성을 결한 경우를 형량의 해태라고 한다.
- ④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위한 법리로는 형량명령 이 있다.
- ⑤ 형량의 대상 중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형량의 흠결 이라고 한다.

16 정답 ③

- ① 적법한 행정계획에 의하여 손실이 생긴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행정행위는 행정결정의 외부에 대한 표시행위이므로 행정 내부에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(대판 1976.6.8, 75누63).
- ③ 형량의 해태란 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자를 말하며, 오형량이 형량에 있어 비례성을 결한 것을 말한다.
- ④ 행정계획에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재량의 통제를 형량명

령이라 한다.

- ⑤ 형량의 흠결이란 고려하여야 할 이익을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.

17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상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무부과의 근거법규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.
 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한다.
 ③ 공공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는 없다.
 ④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된다.
 ⑤ 대집행에 대해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실행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.

18 정답 ④

- ①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. 즉, 철거를 명할 때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.
 ② 대집행은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. 대집행의 의무는 행정법상의 의무이어야 하며, 행정주체에 대한 의무라도 사법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(대판 1966.2.28, 65누141).
 ③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.대판 1998.10.23, 97누157).
 ④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,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,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(대판 2000.5.12, 99다18909).
 ⑤ 이는 논란이 존재한다.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며,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.

19 「행정절차법」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 ②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 ③ 단순·반복적인 처분 또는 중대한 처분이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 ④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한 때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.
 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20 정답 ③

- ① 행정절차법은 ‘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.’고 하여 ‘처분의 이유제시 원칙’을 규정하고 있다(행정절차법 제23조).
 ②③⑤ 이유제시원칙에 대한 예외로서는 ㉠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, ㉡단순·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, ㉢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유제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(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).

- ④ 그러나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(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).

21 「국가배상법」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,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
 ② 「민법」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.
 ③ 동조의 영조물은 「민법」제758조의 공작물의 개념보다 넓다.
 ④ 하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객관설이 주관설보다 피해자의 구제에 유리하다.
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22 정답 ①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,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(대판 1995.1.24, 94다45302).
 ② 따라서 국가배상법이 국민에게 유리하다.
 ③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이라고 하여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민법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.
 ④ 주관설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무 위반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면 면책될 수 있으니 이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다. 따라서 객관설이 유리하다.
 ⑤ 위임한 관청은 사무귀속주체로, 경찰관들에게 봉급을 주는 국가는 비용부담자로 책임을 진다(대판 1999.6.25, 99다11120).

23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도, 손실보상은 공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.
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.
 ③ 판례는 구「하천법」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.
 ④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본다.
 ⑤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로써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침해에 대한 보상인 국가배상제도와는 다르다.

24 정답 ⑤

- ① 판례는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.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지 않는다.
 ② 손실보상청구권은 신체에 대한 침해는 불가능하다. 신체에 대한 적법한 침해로 인한 손실은 희생보상청구가 논의된다.
 ③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,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,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. 12. 31.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, 관리청

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,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(대판 2006.05.18. 2004다 6207 전합)

- ④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,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. (헌재 2007. 11. 29. 2006헌바79)
- ⑤ 적법한 경우를 보상이라 하며, 위법한 경우를 배상이라 한다. 옳은 지문이다.

25 공무원의 직무활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심문을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진술할 수 있다.
- ② 상관의 직무상 단순위법인 명령에 대해서 공무원이 복종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받지 않는다.
- ③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횡령액의 5배이내의 징계부가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④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·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⑤ 공무원의 품위유지사무는 직무집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행동에도 적용된다.

26 정답 ②

- ① 형사소송법 제147조, 제177조
- ②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무효인 경우이며, 단순 위법인 경우에는 복종의무가 존재한다. 따라서 이 경우 복종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사유가 된다.
- ③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(授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유용(流用)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(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)
- ④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단서
- ⑤ 품위유지사무는 사적인 부분에까지도 적용된다. (대판 1998.2.27. 97누18172)

2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,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.
- ②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룰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.
- ③ 협의의 소익은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한다.
- ④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건물준공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.
- ⑤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, 특허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부인된다.

28 정답 ⑤

- ①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

시에 합격한 경우,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(대판 1992.7.14. 91누4737).

- ②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(대판 1994.09.09.93누22234)
- ③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다(대판 2007.4.12. 2004두7924).
- ④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.(대판 1992.4.24. 91누11131).
- ⑤ 허가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되나, 특허의 경우는 원고적격이 긍정된다. (대판 1992.7.10. 91누9107).

29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.
- ② 판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이다.
- ③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.
- ④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고,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.
- 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, 즉 처분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.

30 정답 ⑤

- 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
- ②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(대판 1996.3.22., 95누5509).
- ③ (대판 1992.2.14., 90누9032).
- ④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위법성의 인정은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,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성질상 처분 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(대판 1970.3.24. 69누29).
- 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. (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)

31 권한의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권한의 위임은 위임의 해제, 종기의 도래 및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해 종료된다.
- ② 수임청은 그 권한을 위임청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 된다.
- ③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.
- ④ 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무효이다.
- ⑤ 수임청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에 재위임할 수 있다.

32 정답 ②

- ① 옳은 지문이다.
- ② 수입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,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(대판 1997.2.28, 96누1757).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입청이 피고가 된다.
- ③ 권한을 전부위임하게 되면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.
- ④ 위임은 법령이 정한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. 따라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권한 위임은 무효가 된다.
- ⑤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

33 다음 중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?

- ㉠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
- ㉡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
- ㉢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
- ㉣ 「공직선거법」상의 당선소송
- ㉤ 「공직선거법」상의 선거소송

- ① ㉠, ㉡, ㉢, ㉣, ㉤ ② ㉠, ㉡, ㉢, ㉤
- ③ ㉠, ㉢, ㉣, ㉤ ④ ㉡, ㉢, ㉣, ㉤
- ⑤ ㉢, ㉣, ㉤

34 정답 ④

- ㉠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정계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민중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이다. (대판 1995.1.12, 94누2602)
- ㉡, ㉢, ㉣, ㉤ 민중소송이라 함은 ‘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’을 말한다(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). 주민소송과 선거소송, 당선소송은 모두 민중소송에 해당한다.

35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관할 도지사의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신청권이 있다.
- ③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「민법」상의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「공무원연금법」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.
-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.

36 정답 ④

-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,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. (대판 1996.05.31. 95누10617)
- ②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,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. (대판 2008.04.10. 선고 2007두18611)
- ③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(대판 1994.1.11. 93누10057).
- ④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. (대판 2003.05.16. 선고 2001다61012)
-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·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(대판 2004.4.22. 2000두7735 전원합의체).

37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기도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.
- ③ 미아·병자·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의보호조치의 대상자이다.
-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·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으나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·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38 정답 ⑤

-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
-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
-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
-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, 제7항
- 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5항)

39 「행정소송법」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?

- 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
-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
- 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
-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
-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

40 정답 ③

해설 :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. 부작위처분이 변경되면 작위 밖에 없는데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런 소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.